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나.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의 설정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 설정
-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 기준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군민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 례 안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계승인 부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08. 11. 28 ~ 12. 19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군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3.26,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 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